

같은 보험계약에서 받은 두 번째 대출은 왜 철회가 안 됐나

법은 계약마다 14 일을 줬고, 전산은 보험계약마다 한 번만 썼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선을 새 권리의 부여가 아니라 이미 있던 권리의 복원으로 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는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 단위로 정한다. 보험회사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면서 두 번째 이후 대출에는 그 기간이 계산되지 않았다. 바뀐 것은 법이 아니라 전산의 관리 단위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 년 7 월 1 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관리방식을 대출건별로 바꿔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항목	값	비고
관리방식 변경	보험계약별 → 대출건별	금융감독원 2026.7.1
시행일과 적용 범위	2026 년 7 월 1 일 이후 신규 실행분	기존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 기간	14 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 제 1 항
보장성 상품 청약철회 기간	증권 수령 15 일·청약 30 일 중 먼저 오는 날	같은 항
보험계약대출 잔액	47 조원	생명보험회사 2019 년 말. 금융감독원 2020.6.3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	18 조 3,000 억원	같은 자료. 금리연동형은 28 조 7,000 억원

발표문은 종전의 문제를 이렇게 적었다. 동일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추가 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선의 내용은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바꾸는 것이다. 대출건마다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따로 계산된다.

적용 범위는 2026 년 7 월 1 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약관대출이다. 그 전에 실행된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약관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이다. 같은 법 제 46 조 제 1 항은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 일로 정한다. 금전의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지급일부터 센다. 보장성 상품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과 청약일부터 30 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투자성 상품과 자문서비스는 7 일이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는 청약철회권을 계약 하나에 하나씩 준다. 대출성 상품이면 그 대출계약의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 일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에 딸린 부수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대출계약이다. 같은 보험계약에서 두 번째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계약도 두 번째가 체결된다. 조문대로라면 두 번째 대출에도 14 일이 새로 시작된다.

보험회사의 전산은 그렇게 세지 않았다.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저장했기 때문에, 한 보험계약에 대출 기록이 하나만 남았다. 두 번째 대출을 실행해도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최초 실행일 그대로였다. 법이 정한 단위는 대출계약이고 관리 단위는 보험계약이었다. 두 단위가 다르면 권리는 좁은 쪽에 맞춰진다. 이번 개선이 바꾼 것은 조문이 아니라 이 저장 단위다.

이 방식이 오래 유지된 이유는 고칠 유인이 한쪽에만 없었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실행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계할 수 있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작고, 대출이 남아 있는 동안 이자가 들어온다. 금리는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9일 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업무원가에 배분되고, 목표이익률을 따로 산출하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확정해 사례를 지적했다.

철회가 늘면 줄어드는 것은 그 이자 수입이다. 전산을 고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내고, 고쳤을 때 생기는 이익은 소비자에게 간다. 감독 당국이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 방식이 남아 있었던 배경이다. 연구소는 이것을 개별 회사의 태만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이 서로 다른 곳에 있을 때 반복되는 결과로 본다.

청약철회는 중도상환과 다르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9월 17일 발표한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이 그 차이를 적었다.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하고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 28일 일부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고객의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사례다. 두 사안 모두 권리 자체가 아니라 처리 방식에서 갈렸다. 같은 법 제 47조의 위법계약해지는 판매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는 제도다. 제 46조의 청약철회는 위반이 없어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번 개선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2026년 7월 1일 전에 약관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같은 보험계약에서 시행일 전에 한 번, 시행일 뒤에 한 번 대출을 받았다면 두 대출에 서로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뒤의 대출에는 14일이 따로 계산되고, 앞의 대출에는 종전 방식이 그대로 남는다. 계약도 사람도 같은데 실행일만 다르다.

규모는 작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6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2019년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원이다. 그 가운데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이 18조 3,000억 원이다. 같은 자료는 가산금리 산정 개선으로 금리확정형 대출의 금리가 0.31%p에서 0.60%p 내려간다고 적었다. 잔액에 이 폭을 곱하면 연 567억 원에서 1,098억 원이다. 가산금리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만 덜어 낸 금액이 이 정도다.

철회 기간 14일은 소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나간다. 이번 개선에서 보험회사에 새로 요구된 것이 대출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는 의무다. 안내를 새로 요구했다는 것은 종전에 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갚지 않은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이 상계되므로, 대출 사실을 잊고 있으면 나중에 받는 환급금과 보장이 그만큼 줄어든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시행일 전에 실행된 약관대출은 종전 관리방식 아래 남는다. 같은 보험계약에서 나온 대출이라도 실행일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의 계산 방식이 갈린다. 소급 적용 여부는 발표문에 없다.

- 바뀐 것은 대출정보 관리방식이고 기간 14 일은 그대로다. 두 번째 대출을 받은 날을 소비자가 스스로 세지 않으면 기간은 지나간다. 보험회사가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알려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안내를 어떤 화면과 서류에 어떤 문구로 하는지는 회사가 정한다. 저축은행에서는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회사에서 같은 처리가 있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청약철회를 해도 이용한 기간의 이자는 소비자가 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7 조는 원금과 약정이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반환을 정한다. 철회로 없어지는 것은 대출 기록과 그 뒤의 이자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일과 계약서류를 받은 날을 확인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실행본이면 그 대출건마다 14일이 따로 계산된다.
- 대출 실행 화면과 문자, 계약서류에서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찾아 저장해 둔다. 두 번째 이후 대출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지 대조한다.
- 철회를 요구할 때는 서면이나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청약철회'라고 적어 발송한다. 중도상환 신청과 서식이 다르므로 창구에서 처리 명칭을 확인한다.

금융회사

- 두 번째 이후 대출에도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출 실행 화면과 계약서류에 대출건별로 표시한다. 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당국

- 대출건별 관리로 바꾼 전산이 시행일 전 실행분까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다룰 수 있다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안내 문구와 실제 처리 결과를 표본으로 점검한다. 저축은행에서 확인된 중도상환 처리와 같은 사례가 보험업권에 있는지 함께 본다.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중도상환수수료
금융상품	종신보험 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예·적금담보대출
금융사건	연 7%를 약속한 계약 80 조원이 아직 남아 있다 896 만 건이 팔린 환급금 0 원 보험
피해 구제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변경, 대출건별 청약철회 가능, 2026년 7월 1일 시행	1 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보호운영팀 2026.7.1 발표 원문 전재. 종전 문제로 "동일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추가 대출에 대해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적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584
적용 범위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실행되는 약관대출이고 기존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대출건별 청약철회권 보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1 차	위 동일 자료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584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 14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되,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지급일부터 기산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 제 1 항 제 3 호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14 days from any of the following dates (if money, goods or service under a contract are paid, delivered, or provided later than either of the following dates, the date of payment, delivery, or provision)"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94
보장성 상품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투자성 상품·자문서비스는 7일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제 2 호 조문 원문 확인. 영문본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an insurance policy is delivered or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whichever comes earlier"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94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 대출성 상품은 원금·약정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 조 제 2 항~제 4 항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94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반환할 이자는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이고, 인지세 등 세금·공과금과 저장권 설정 관련 비용이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 조문 원문 확인. 같은 조 제 1 항 제 3 호는 시설대여·할부금융·외상판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자본시장법 제 72 조 제 1 항의 증권 담보 신용공여 등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69086&cseq=2081627
위법계약해지는 적합성·적정성·설명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 위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안에 계약을 장래를 향해 해지하는 제도이며, 판매업자는 수수료·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 조문 원문 확인.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신 의무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95
약관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에 해당한다	1 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 조 제 3 호 조문 원문 확인. 제 2 조 제 1 호 가목·라목의 대출 등을 대출성 상품으로 정한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241
생명보험회사의 2019년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 47조원(금리확정형 18조 3,000억원, 금리연동형 28조 7,000억원), 가산금리 개선으로 금리확정형 대출금리 0.31%p~0.60%p 인하	1 차	금융감독원 2020.6.3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생보사의 '19년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3조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7조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136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에서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법인세비용 등이 업무원가에 배분되고,	1 차	금융감독원 2024.1.9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원문 전재. 원문 문구 "업무원이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기타 목표이익률 별도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목표이익률을 별도 산출하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확정한 사례가 지적됐다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892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취지는 대출 필요성과 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행사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하며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1 차	금융위원회 2015.9.17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원문 전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46566
일부 저축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확인돼,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 전면 전산화와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 안내 확대를 2026 년 2 월 1 일부터 시행	1 차	금융감독원 2026.1.28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구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업무처리 미흡 사례"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6332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실행되고, 금리는 금리확정형이면 예정이율에, 금리연동형이면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계할 수 있다	2 차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대출금리 공시 안내문. 원문 문장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kpub.knia.or.kr/etcDisc/loan/insContractLoan.do
금리확정형 계약 대출 잔액에 인하 폭을 곱한 값 연 567 억원~1,098 억원	파생	18 조 3,000 억원 × 0.31% = 567.3 억원, 18 조 3,000 억원 × 0.60% = 1,098 억원. 금융감독원 2020.6.3 자료의 잔액과 인하 폭을 곱한 산술값이며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669 자	14 건	12 건 (86%)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시행일 전에 실행된 약관대출까지 대출건별 관리가 넓어졌는가. 대출건별 청약철회 안내 문구가 두 번째 이후
대출 실행 화면에 실제로 표시되는가. 보험업권에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한 사례가 감독 당국 점검에서 확인되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